

#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업삿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589
------	------

발의일자 : 2024. 8. 22.

발 의 자 : 업삿별 의원

이인식 의원

## 1. 제안이유

의사상자에게 국가적 예우 이외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추가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희생한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국민의 귀감으로 삼아 정의로운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 공영주차장, 문화시설 및 국가유산의 이용 요금 감면 조항 신설(안 제4조제2항제3호, 제4호 및 제5호)
- 나.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설립·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 조항 신설(안 제4조제2항제6호)
- 다. 기타 띄어쓰기 등 자구 수정(안 제5조제1호)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예산조치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첨부

2) 입법예고: 2024. 8. 23. ~ 2023. 8. 30.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구가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4.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5. 구가 설치·관리하는 문화시설 및 국가유산 관람료 감면
6. 구가 설립·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

제5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금천구표창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지원사업 등) ① (생   략)</p> <p>② 구청장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p> <p>1.·2. (생   략)</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3. (생   략)</p> <p>제5조(예우 등) 구청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존중되고 국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1. 「<u>서울특별시금천구표창조례</u>」가 정하는 바에 따른 표</p>	<p>제4조(지원사업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u>구가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u></p> <p>4. <u>구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u></p> <p>5. <u>구가 설치·관리하는 문화시설 및 국가유산 관람료 감면</u></p> <p>6. <u>구가 설립·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u></p> <p>7. (현행 제3호와 같음)</p> <p>제5조(예우 등) ----- ----- ----- ----- ----- -----.</p> <p>1. 「<u>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조례</u>」-----</p>

창 2. ~ 4. (생략)	-- 2. ~ 4. (현행과 같음)
-------------------	------------------------

# 현행조례

##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12. 30.]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888호, 2016. 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추가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희생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 “의상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3.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4. “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이하 “구민” 이라 한다)이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이하 “의사상자” 라 한다)가 된 때 <개정 2016.12.30.>

2. 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구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개정 2016.12.30.>

제4조(지원사업 등)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 보상금의 지급 및 보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구청장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1. 의사자의 유족에게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2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 의상자에게는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영 제2조에 규정한 부상의 정도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가. 1급, 2급 : 5백만원 이하

나. 3급, 4급 : 3백만원 이하

다. 5급 ~ 9급 : 2백만원 이하

3.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예우 등) 구청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존중되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금천구표창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표창

2. 구민의 날 행사 등 각종 행사 시 우선적 초청 및 예우

3. 금천구소식지 등 향토지 발간 시 공적 게재

4.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신청)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이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보호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30.>

제7조(준용 등)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칙(제629호 2010.11.23)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88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 법령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106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16조(보호기관)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지급·의료급여·교육보호·취업보호 및 장애보호의 실시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다.